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1. 6. 30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6월 1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년 6월 21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82회(제1차정례회)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(2001.6.30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도시관리국장 김성학)

가. 개정이유

-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내용중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제출 서류 등의 규정을 삭제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권리자들에게 편의를 도모하여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코자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(1) 재개발구역내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받은 경우 건축합의기간 규정 삭제 (안 제14조) :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이 없음
- (2) 재개발구역내 가격평가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(안 제19조제2항) :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사업시행규칙 제26조(분양설계의 기준)4호에 명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민창규)

본 조례(안)은 불필요한 규정사항 및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권리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8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6. 19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내용중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제출 서류 등의 규정을 삭제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권리자들에게 편의를 도모하여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코자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재개발구역내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받은 경우 건축합의기간 규정 삭제 (안 제14조) :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이 없음

- 나. 재개발구역내 가격평가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(안 제19조제2항)
 :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사업시행규칙 제26조(분양설계의 기준)4호에 명시

3. 참고사항

- 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6조4호
- 합의사항 : 합의되었음.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증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증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=====

현 행	개 정 (안)
제14조(건축합의기간) 수인이 공유로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 받은 경우의 건축합의기간은 시행기간 만료일 1년 전까지로 한다.	삭 제
제19조(가격평가절차) ①의 1~5 생략 ②기타 가격평가방법, 감점수수료의 부담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	제19조(가격평가절차) ①의 1~5 현행과 같음 ②삭 제